



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      | 제 2015 - 5 호               |
| 의 결<br>연 월 일 | 2015. 2. 2.<br>(제61차 정기회의) |

의  
결  
안  
건

업무방해범죄  
양형기준 의결의 건

|       |        |
|-------|--------|
| 제 출 자 | 수석전문위원 |
|-------|--------|



## **1. 의결 주문**

업무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**2. 제안이유**

제4기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인 업무방해범죄에 관하여 양형위원회 제60차 회의에서 확정된 양형기준안을 토대로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정 심의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이를 시행하려는 것임

## **3. 주요 내용**

별지와 같음

**[별지]**

## **업무방해범죄 양형기준**

업무방해범죄의 양형기준은 업무방해(형법 제314조 제1항), 컴퓨터업무방해(형법 제314조 제2항), 경매·입찰방해(형법 제315조), 건설산업기본법위반(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내지 제3호)의 죄를 저지른 성인(19세 이상)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 I. 형종 및 형량의 기준

### 1. 업무방해

| 구분   | 감경   | 기본        | 가중        |
|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업무방해 | - 8월 | 6월 - 1년6월 | 1년 - 3년6월 |

| 구분             |            | 감경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중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별<br>양형<br>인자 | 행위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</li> <li>○ 위력·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</li> <li>○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</li> <li>○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li>○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</li> <li>○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</li> <li>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li>○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| 행위자<br>/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아자</li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○ 자수 또는 내부고발</li> <li>○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종 누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반<br>양형<br>인자 | 행위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극 가담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행위자<br>/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</li> 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(집행종료 후 10년 미만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업무방해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

- ①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.
- ② 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.

## 2. 경매·입찰방해

| 유형 | 구분         | 감경      | 기본       | 가중       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1  | 일반 경매·입찰방해 | - 8월    | 6월 - 1년  | 10월 - 2년  |
| 2  | 건설 입찰방해    | 6월 - 1년 | 10월 - 2년 | 1년6월 - 4년 |

| 구분             |            | 감경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가중요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특별<br>양형<br>인자 | 행위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</li> <li>○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</li> <li>○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li>○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</li> <li>○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</li> <li>○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</li> </ul> |
|                | 행위자<br>/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아자</li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없음)</li> <li>○ 자수 또는 내부고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동종 누범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일반<br>양형<br>인자 | 행위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극 가담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| 행위자<br>/기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신미약(본인 책임 있음)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</li> 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이종 누범,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전과(집행종료 후 10년 미만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[유형의 정의]

### 1. 업무방해

-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(이하 같음).

| 구성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법조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형법 제314조 제1항 |
|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 | 형법 제314조 제2항 |

### 2. 경매 · 입찰방해

#### 가. 제1유형

| 구성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법조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 | 형법 제315조 |

#### 나. 제2유형

| 구성요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법조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건설공사의 입찰에서 다음 각 행위를 한 경우<br>(1)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가 서로 공모하여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<br>(2) 다른 건설업자의 견적을 제출<br>(3) 위계 또는 위력, 그 밖의 방법으로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 |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제1호 내지 제3호 |

## [양형인자의 정의]

### 1. 업무방해

#### 가.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(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
  -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,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나.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
  - 공공의 이익 또는 타인의 권익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(자신의 권익 실현을 아울러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)
  - 방해된 업무가 적법성 또는 유효성 등의 측면에서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낮고, 그 점이 범행동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다.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

-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무수행의 지장·마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를 의미한다.

#### 라.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

-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,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

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준할 정도의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경우도 포함한다.

#### 마. 소극가담

-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- 다만,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.

#### 바.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
  -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
  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  - 문서위조,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(다만,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 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)
  -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
  -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사.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

- 피해자의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업

무수행의 지장·마비 또는 그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.

#### 아.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피해자에 대한 보복·원한,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
  - 정당하지 않은 경제적 대가 또는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경우
  -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 2. 경매·입찰방해

#### 가.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범행으로 인한 경매지연, 저가낙찰, 특정업체의 선정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
  - 경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자, 채권자, 경락인, 입찰시행자 등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경미한 경우
  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나.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

-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  -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
  - 폭력조직 기타 용역을 동원하여 세력을 과시하거나 현장을 장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경우
  -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
  - 문서위조, 조작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(다만, 문서위조 또는 변조죄 등이 성립되어 그 범죄의 양형기준과

다수범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)

-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
-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아니한 신종의 전문적 수법을 창출하여 범행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## 다.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

○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.

- 경매방해로 인한 저가낙찰, 경매지연 등으로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입은 피해가 중대한 경우
- 원자력발전소 부품 입찰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
-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대형 국책사업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
-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

## [양형인자의 평가원칙]

### 1. 형량범위의 결정방법

-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.
- 다만,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  - ①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/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. 다만,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는 행위인자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다.
  - ②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/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위 ①, ②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①, ②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.
-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,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,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.

### 2. 선고형의 결정방법

-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.

## [공통원칙]

### 1.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

- ①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/2까지 가중한다.
- ②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/2까지 감경한다.

### 2.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

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/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.

### 3.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

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작량감경 사유로 고려한다.

## [다수범죄 처리기준]

### 1. 적용범위

-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.

### 2. 기본범죄 결정

-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/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. 다만,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.

### 3. 처리방법

-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.
  - ①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②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,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2,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/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.
  - ③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

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.

## II. 집행유예 기준

### 1. 업무방해

| 구분             | 부정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긍정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요<br>참작<br>사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li>○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</li> <li>○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</li> <li>○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</li> <li>○ 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</li> </ul>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자수 또는 내부고발</li> <li>○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</li> <li>○ 위력·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</li> <li>○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</li> <li>○ 처벌불원(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)</li> 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 |
| 일반<br>참작<br>사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</li> <li>○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</li> <li>○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 없음</li> <li>○ 계획적인 범행</li> <li>○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</li> <li>○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</li> <li>○ 피해 회복 노력 없음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</li> <li>○ 우발적인 범행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</li> <li>○ 상당 금액 공탁, 일부 피해 회복</li> <li>○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</li> <li>○ 피고인이 고령</li> <li>○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</li> <li>○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</li> <li>○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</li> </ul>    |

## 2. 경매·입찰방해

| 구분             | 부정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긍정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요<br>참작<br>사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</li> <li>○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</li> <li>○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·경제적 피해가 야기된 경우</li> <li>○ 동종 전과(5년 이내의,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)</li> </ul>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</li> <li>○ 자수 또는 내부고발</li> <li>○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</li> <li>○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</li> <li>○ 공범의 범행수행을 저지하거나 곤란하게 한 경우</li> <li>○ 형사처벌 전력 없음</li> </ul>          |
| 일반<br>참작<br>사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</li> <li>○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</li> <li>○ 약물중독 또는 알코올 중독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 없음</li> <li>○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</li> <li>○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</li> <li>○ 진지한 반성</li> <li>○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</li> <li>○ 피고인이 고령</li> <li>○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</li> <li>○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</li> <li>○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</li> </ul> |

## **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]**

-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
  -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.
  
- 전과의 기간 계산
  -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,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.

## [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]

-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 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,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.
-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.
-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.
-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부정(긍정)사유와 일반긍정(부정)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(부정)사유와 주요부정(긍정)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,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·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.